

<<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

1) 업무관리시스템 공개 · 부분공개 시 주의사항 확인

- 공개여부(시민) :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열람범위(내부) : 내부직원을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안내
- 열람제한(보안) : 엠바고 문서인 경우 원문공개 날짜를 지정 가능 안내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document management. It includes fields for document title, category, and location. The main section is for publication settings, with options for '대시민공개' (Public), '부분공개' (Partial), and '비공개' (Private). The '부분공개' option is selected, and a red box highlights a warning: '개인정보나 내부 협의(진행)중인 문건이 공개될 경우 관련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elow this, there are checkboxes for '공개제한부분' (1-8) and '공개제한상설사유'. The '열람범위(내부)' section has '기관' (Agency) selected, with a red box warning: '전직원 열람으로 내부직원을 통한 정보유출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e '열람제한(보안)' section has '엠바고' (Embargo) selected, with a red box warning: '엠바고 문서인 경우 재원공표일 지정'.

2)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 시 행정안전부 문서제목 공개여부 확인

- 공개되는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설정 가능

- ①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사항인 경우
- ② 문서제목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 : 김oo의 비위사실 통보)
- ③ 문서제목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ooo에 대한 불시단속 계획)
- ④ 문서제목의 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의 사항

- 문서내용이 비공개라고 해서 문서목록도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목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 원칙적으로 제목에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목 작성 시 주의요구(제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제)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document management. On the left, there are tabs for '결재정보' (Approval Info) and '인감' (Seal). The main area is titled '문서정보' (Document Info) and includes fields for '제목' (Title), '과제카드' (Task Card), '문서취지' (Document Purpose), '공개여부(시민)' (Open to Citizens), '열람범위(내부)' (Access Scope), and '열람제한(보안)' (Access Restriction). Below these is a '결재경로' (Approval Path) table with columns for '순번' (Order), '처리방법' (Action), and '직위(직급)' (Position/Grade). The table shows one entry: '1' with '기안' (Proposal) and '주무관' (Staff Officer). Further down are '시행정보' (Implementation Info) and '관련정보' (Related Info)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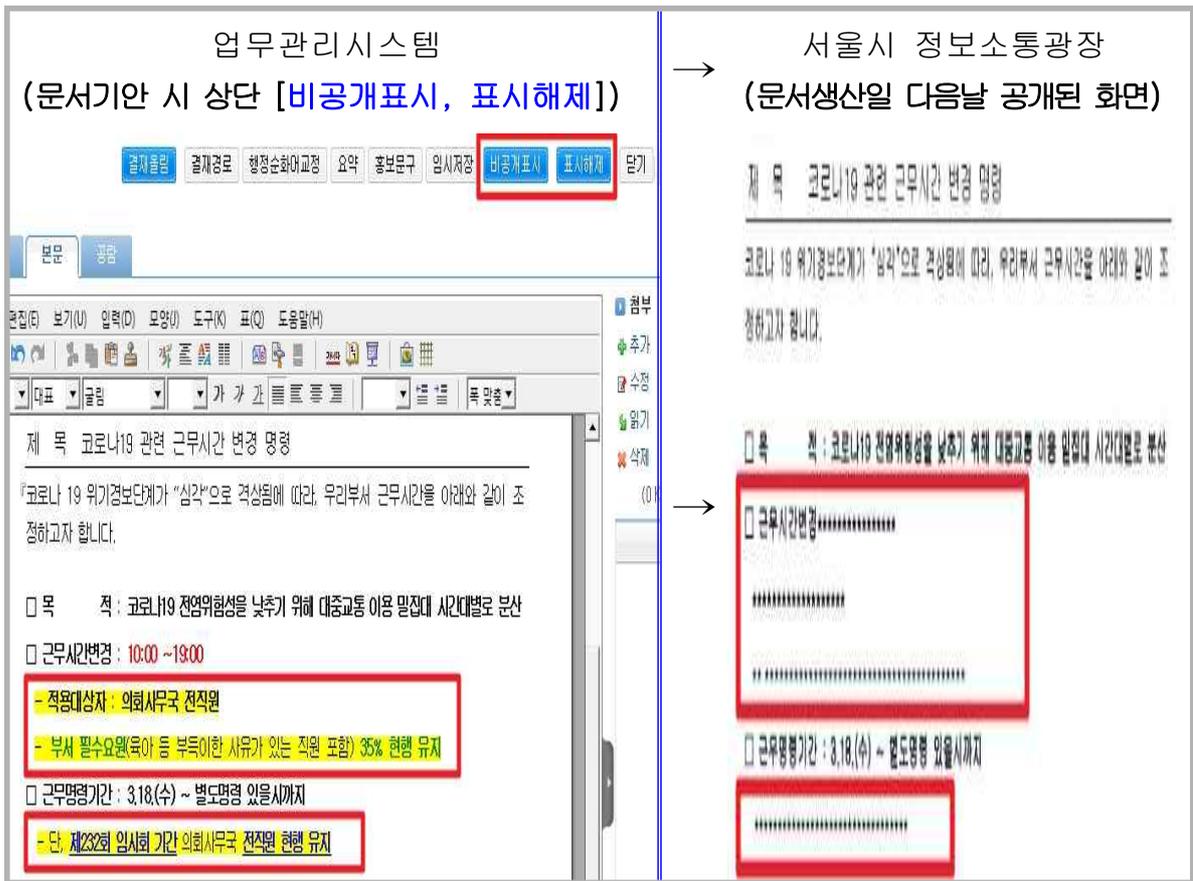
Overlaid on the right is a pop-up window titled '행정안전부 문서제목 공개' (Ministry of the Interior Document Title Disclosure). It contains the following text:

□ 공개되는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사항인 경우
2. 문서제목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 : 김oo의 비위사실 통보)
3. 문서제목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ooo에 대한 불시단속 계획)
4. 문서제목의 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문서내용이 비공개라고 해서 문서목록도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목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 원칙적으로 제목에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목 작성 시 주의요구(제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자제)

3) 업무시스템 개선 기능(문서기안 시 마스킹¹⁾ 기능 적용)



① 문서기안 시 마스킹 기능 적용 방법

- 마스킹 표시 : 비공개부분 블럭지정 후 **비공개표시** 클릭
- 마스킹 해제 : 비공개표시 부분을 다시 블럭지정 후 **표시해제** 클릭

※ 문서기안 마스킹 기능 적용 시 주의 사항

- 한글파일 등에서 문서 작성한 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옮겨서 문서 기안을 하면 **한글파일 등에 적용한 음영표시 글자는 비공개 처리됨으로 주의**

ex) 예시문 중 “ 근무시간변경 : 10:00~19:00 (흰색음영적용 한글파일문서) →
→ 근무시간변경***** ” 비공개 처리

1)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이미지를 자르는 등의 작업(가리기)